

2023년 제11회 바다식목일(‘23.5.10)을 기념하여 수산자원조성 관련 분야에 기여하고, 적조 예방 및 방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산자원을 보전하는데 공헌한 자를 발굴·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09월 19일
해양수산부장관

2023년 수산자원보전유공 정부포상자 공고 계획

□ 포상 개요

- (목적) 바다식목일 기념(5.10일) 및 적조대책 유공자를 발굴·포상하여 수산자원보전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공지와 자부심 고취
 - 바다숲,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조성·관리 및 수산자원 보전·회복을 위해 관련 분야에 기여한 유공자
 - 적조 발생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피해감소에 기여한 유공자
- (포상 시기) 2023년 바다식목일(5.10일) 전·후
- (규모) '22년의 경우 포상 10점(훈장 1, 포장 1, 대표 4, 국표 4) / 장관 34점

<'22년 포상 세부내역>

구 분	계	훈 장	포 장	대통령표창	총리표창	장관표창
총 계	44	1	1	4	4	34
▪ 바다식목일 기념	30	1	1	3	3	22
▪ 적조 대책	14	-	-	1	1	12

* '23년 최종 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및 우리부 운영지원과와 협의 후 확정

- 공고기간 : '22.9.19(월)~'22.11.30(수)

* '18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간 없이 포상계획 단계부터 연중 공모('18.4)

□ 대상자 추천 및 포상대상자 선정

- (추천자격) 제한 없음(일반국민, 민간단체, 공공기관 등)
- (추천대상자) 수산자원보전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련 분야 공적이 있는 자
- (수공기간) 훈장은 15년이상, 포장은 10년이상, 표창(대통령, 국무총리)은 5년이상, 장관표창은 3년 이상을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
- (포상절차)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추진절차 이행
 - * ①연도별 포상계획 수립(행안부)②후보자 공모(행안부, 각부처)③각 부처별 규모 협의(행안부)④후보자 공개검증(각부처)⑤포상 후보자 추천(각부처→행안부)⑥부적격 사유 등 검토(행안부)⑦정부포상 대상자 보고(행안부)⑧결과 통보(각부처)
- (포상후보자 선정) 각 분야별로 추천된 포상대상자를 홈페이지 공개 검증, 범죄경력, 산재율, 임금체불 및 체납 조회 등을 통해 적격자 선발
- (공적심사)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행정안전부에 추천
 - * 추천 후보자 중에서 2배수 이상 선발하고 포상규모 협의 진행상황에 따라 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확정

□ 향후계획

- 포상 후보자 추천 홈페이지 공고('22.9~'22.11) → 행안부 규모협의('23.2월) → 공개검증·범죄경력·체납 여부 등 조회('23.3월) → 공적심사위원회 개최('23.4월) → 차관·국무회의 등('23.4월)

1. 개요

□ 일반적 기준

- 상훈법령 및 정부포상업무지침(행정안전부)에 근거하여 소속기관, 지자체, 수산관련단체 등에서 유공자 추천을 받아 '공적심사위원회'에서 대상자 선정 및 행안부 추천

□ 수공기간

- 훈장은 15년 이상, 포장은 10년 이상, 표창(대통령, 국무총리)은 5년 이상, 장관표창은 3년 이상을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

□ 재포상 금지기간(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)

-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
①훈장은 7년이상 ②포장은 3년 이상 ③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아야 함

* 정부시상(상장)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

-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
* 다만,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

-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
2. 포상후보자 추천 및 심사

□ 추천자격 : 제한 없음(일반국민, 민간단체, 공공기관 등)

□ 추천대상자

- 훈격별로 당해분야의 수공기간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및 정책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

-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및 정착에 크게 기여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 발전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자
-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결성과 활동에 리더쉽을 발휘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
-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
- TAC, 금어기, 금지체장 등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에 크게 기여한 자

□ 포상후보자 추천 및 선정

- 포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기록한 추천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에 직접 또는 우편(E-mail 포함)으로 '22.11.30(화)까지 추천
 - 담당자 :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최상민(044-200-5535/choigosuya@korea.kr)
 - 반드시 추천서의 진위성, 포상 적합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, 검증절차를 거쳐 공적조서를 작성
- 각 분야별로 추천된 포상대상자를 홈페이지 공개 검증 실시, 범죄경력 및 산재율 조회 등을 통해 적격자 선발
-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(행안부)

3. 추천제한

1.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
 - 가. 수사 중이거나,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 - 나.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
 - 다.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라.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마.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바.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- 사.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- 아.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2.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**
- 3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**
- 가.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8조의4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- 나. ‘임원’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- ※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<http://dart.fss.or.kr>, [회사별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](#))을 통해 확인
- 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- 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- 다.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4.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**
- 가.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- 나. 최근 1년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다.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5.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**
- 가.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- 나.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- 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6.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0조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**
- * (국세)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, 체납액 등 공개
- * (관세)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
- * (지방세)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
- 7.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**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